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69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이병진·김문수·박 정

한정애 • 윤후덕 • 최기상

이훈기 • 권향엽 • 허성무

강준현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 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
	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
	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
	가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